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0
----------	-----------

제안일자 : 2019. 02. 28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특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을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여,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권장구역과 한옥보전구역 외에서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하고 있는 비한옥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건축자산 진흥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으로 명확히 함(안 제12조의2).
-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에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7조 제1항바목).
-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함(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7조제2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 중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하고,

안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산할 수 있으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범위(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 및”을 “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로 한다.

안 제27조제1항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 2, 제7조제1항 바목”을 “제6조의2”로 한다.

바.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2조의2(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 폐율) 법 제21조제2 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 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 다.	제12조의2(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 폐율) ----- -----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건축자 산 진흥구역 ----- ----- -----.
제21조(한옥 수선 등 의 보조 및 용자지원)		제21조(한옥의 소요비 용 지원)	제21조(한옥의 소요비 용 지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 및 용자지원 한 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이 경우 한옥보전구 역은 50퍼센트 이내에 서 가산할 수 있으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용자 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 ----- -----가산할 수 있으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 의 구체적인 범위(한 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 및 --- -----.	② ----- ----- ----- -----가산(한옥을 부분 수선 하는 경우는 제 외)할 수 있으며, ----- ----- -----.

1. (생략)

2.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가.~나. (생략)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외관, 지붕, 창
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
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
지원

4. (생략)

③ ~ ⑤ (생략)

제27조(건축자산 전문위원
회 설치·운영)

① (생략)

가. ~ 라.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한옥-----

가.~나. (현행과 같음)

3. -----
-----:

2천만 원까지 보조지
원 및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자산 전문위원
회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소
요비용 지원 심의기
준 제·개정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3. -----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자산 전문위원
회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1조 제목“(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용자지원)”을“(한옥의 소요 비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산할 수 있으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범위 및”을 “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한옥을 한옥”을 “한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을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지원 심의기준 제·개정
- 바.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항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제6조의2, 제7조제1항제1호아목”을 “제6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 인인증제 등 관련 제도 도입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설〉</p>	<p>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p> <p>제12조의2(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21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용자지원)</p> <p>① (생 략)</p> <p>②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옥보전구역은 50퍼센트 이내에서 <u>가산할 수 있으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용자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1. (생 략)</p>	<p>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u> -----.</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u>비한옥을 한옥으로</u> 신축하는 경우 가. ~ 나. (생략)</p> <p>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u>1천만 원까지 보조 지원</u></p> <p>4.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27조(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p> <p>① (생략)</p> <p>1. (생략)</p> <p>가. ~ 라.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 (생략)</p> <p>②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제1항(<u>제1호를 제외한다</u>),</p>	<p>2. <u>한옥</u>-----</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3. -----: ----- ----- ----- <u>2천만 원까지 보조 지원 및 1천만 원까지 용자지원</u></p> <p>4.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27조(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지원 심의기준 제·개정</u></p> <p>바. <u>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 -----(<u>제1호 및 제3호</u>-----</p>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의2, 제7조제1항제1호아목,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한다.	-----), -----, 제6조의2, ----- -----.